

# 『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』 협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전통한옥의 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한 『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』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』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1. 한옥밀집지역 :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

2. 사업비 :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·간접비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.

제3조(사업의 범위) ①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시행하게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옥 및 비 한옥의 매입과 보상

2. 매입재산의 개·보수 설계 및 시공

3.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

4.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의사항 등

② 제1항의 사업범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나 “갑”的 내부방침으로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 기간)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재산의 관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때까지로 한다

제5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

1. 사업 수행에 따른 계획의 수립, 사전조사,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

2. 재산 매입비용

3. 관계 법령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

4. 매입 재산 관리비용

5.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개·보수비 등

6. 사업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

7. 기타 사업집행 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

- ②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1. 보상대행에 따른 수수료 :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수수료율
  2. 공사대행에 따른 수수료 :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제12조의 수수료율
- ③ 사업비는 “갑”의 예산범위 내에서 여건변동(물가, 계획변경, 협약변경 등)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조정한다.
-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“갑”은 “을”的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개산급(일시불 또는 분할지급)으로 지급한다.
- ⑤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자연·기피할 수 없으며 당해 연도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후 조치한다.
- ⑥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자금운용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제6조(한옥 등의 매입 및 개·보수) ① “갑”은 매입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“을”에게 통보하고, “을”은 통보 받은 매입대상 재산의 사권설정 여부 조사, 재산의 감정평가, 매수협의 등 매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사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매입 후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매입대상 재산은 매입 계약전에 “갑”에게 통보하고 “갑”的 결정에 따른다.
- ③ “갑”은 매입이 확정된 재산의 활용계획을 “을”에게 통보하고 “을”은 매입이 완료된 재산은 즉시 “갑”的 명의로 등기이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매입재산의 관리 및 개·보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“을”은 매입재산을 개·보수함에 있어 전통 한옥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개·보수하되 “갑”이 지정한 용도에 가장 적합하게 개·보수하여야 한다.

- 제7조(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) ① 사업비의 정산은 “갑”的 회계연도별로 구분 정산하되 최종 정산은 기 정산분을 포함하여 사업종료(위탁완료)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“갑”에게

반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“을”의 청구에 의하여 “갑”이 확인 후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.

- ③ “을”은 사업비 운용상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총액과 재산 위탁수입을 사업비 정산 시 “갑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부터 2개월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“갑”的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- ⑤ “갑”은 “을”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.
- ⑥ “을”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, 지방공기업법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~~자치법규의~~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“갑”은 이 사업과 관련한 “을”的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- ② “갑”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을”的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“을”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“갑”은 사업과 관련한 “을”的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을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손해배상 등) ① “을”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을”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 “을”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갑”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을”은 이를 “갑”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(이하 “해지 등”이라 한다)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
2. “을”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“갑”이 인정하는 경우
  3. “갑”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③ “갑”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을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“갑”은 “을”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“을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“갑”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제11조(기타사항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
- 제12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 시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“갑”的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민·형사상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·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-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에서 규정한 “갑”과 “을”的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갑”과 “을”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. 07. 12.

“갑” 서울특별시  
 (서울특별시 종로구 읍내동 1가 63)  
 시장 오 세훈

“을”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 
 (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)  
 사장 유 민근